



제340회 임시회

2015.06.10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
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
교육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윤 흥 창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15년 06월 01일

○ 회부일자: 2015년 06월 02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·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(안 제3조)
- 나. 3년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지원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마.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안 제8조, 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·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하여,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행하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추진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.
- 우리나라는 매년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약 6만~7만명이나 되고 우리 충청도 매년 평균 약 1,600명 정도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임. 2014년에도 도내 1,626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으며, 이 가운데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초등학생 38명, 중학생 241명, 고등학생 606명이나 됨.

- 학업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학업중단 예방정책과 교육활동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, 또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복귀나 다양한 대안 교육환경을 제공 하는 등과 같은 교육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, 이번 조례 제정은 학업중단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실현을 촉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과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.

관계 법령 발췌

□ 초·중등 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제4조(학교의 설립 등)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·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교육감 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사립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8조(학생의 징계)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. 다만,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학교 밖 청소년 이란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
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
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
□ 청소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“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할 수 있다.

비용 추계서

1. 비용추계내용

○ 재정수반요인

-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제5조, 제7조, 8조, 9조에 따른 예산 추계

2. 비용추계

-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이 시행되면 416,82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(매년 확대 예정)

구분 \ 연도	2015년도	2016년도	2017년도	2018년도	2019년도
학업중단 숙려제 운영	213,000천원	288,000천원	288,000천원	288,000천원	288,000천원
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교 운영	150,000천원	200,000천원	250,000천원	300,000천원	350,000천원
대안교육위탁 교육기관	49,000천원	50,000천원	60,000천원	70,000천원	80,000천원
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 청 소년 교육지원 실무 협의회	4,820천원	6,320천원	7,820천원	9,320천원	10,820천원
합 계	416,820천원	544,320천원	605,820천원	667,320천원	728,820천원

3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○ 기초자료 및 세부내역

- 학업중단숙려제 운영(도내 모든 고등학교 지원 및 중학교까지 지원비 확대 예정) : 213,000천원
 - 1,000천원×15교=15,000천원, 3000천원×66교=198,000천원
-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교 운영(15교운영): 150,000천원
 - 10,000천원×15교=150,000천원

-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(5기관 지정에서 점차 확대운영): 49,000천원
10,000천원×4기관=40,000천원, 9,000천원×1기관=9,000천원
-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실무 협의회 운영
 - 위원회 참석수당(2,500천원) : 70천원×5명×5회=1750천원, 30천원×5명×5회=750천원
 -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컨설팅 및 업무추진비(4,820천원):
150천원×10명×3회=4500천원, 16천원×10명×2회=320천원

4. 작성자 : 진로인성교육과 인턴장학사 박경원(290-2285)